

## 설립단위(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)

- ❖ **원칙** 공무원직장협의회는 **기관장이 4급 이상**(소방정 이상)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 **기관단위로** 설립
  - ▶ 한 개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 불가, 2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음
  - ▶ **설립 의무 X, 미설립 기관공무원의 상급 · 타기관 협의회 가입 X**

## 설립절차(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)

- ❖ **개요** 설립총회 개최 → 설립사실 통보 → 협의회 설립증 교부
  - ▶ 법 시행 전 협의회 설립 관련 준비행위 효력 : 법적 행위 (총회 개최, 단체 결성 등)는 무효, 사실행위(가입 희망자 파악 등)는 유효
- ❖ **설립총회 개최 및 통보**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
  - ▶ 설립취지, 설립총회 개최일시장소, 설립준비대표자 등
  - ※ 소속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 통보
- ❖ **설립증 교부** 기관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
  - ※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 보완 요구
- ❖ **협의회 설립 시기**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봄

## 가입자격(법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)

- ❖ **원칙**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음
- ❖ **예외**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
- ❖ **절차**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
## 가입범위(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)

- ❖ **직급제한** 소방경 이하(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)
  - ▶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: 5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지휘 · 감독의 직책에 보임되어 있거나, 대부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으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
- ❖ **직무제한** 소방경 이하 (6급 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공무원)
  - 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
  - ② 지휘 · 감독의 직책(법령 훈령 사무분장)
  - ③ 인사업무(임용업무)
  - ④ 예산 · 경리 · 물품출납업무
  - ⑤ 비서업무
  - ⑥ 기밀업무 : 외교 · 군사 · 감사 · 조사 · 수사 · 검찰사무 · 출입국관리 · 유선교환업무
  - ⑦ 보안 · 경비업무 : 청사관리기관, 교정 · 보호시설
  - ⑧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(협의회업무)
 ※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(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,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)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, 공고

## 탈퇴(법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)

- ❖ **원칙**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서 탈퇴할 수 있음
- ❖ **절차** 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- ❖ **의무적 탈퇴**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· 전보 ·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봄 - 이 경우,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

## 운영기준(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, 11조, 12조)

- **회원의 권리와 의무**
  - ❖ **권리** 협의회 가입 · 탈퇴의 자유와 협의회 운영의 균등 참여권이 있으며,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거 · 피선 거권을 가짐
  - ❖ **의무**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 준수 의무, 협의회 지시에 복종할 의무, 협의회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음
  - ❖ **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**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음
  - ❖ **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**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음.
  - ❖ **협의회 규정** 협의회는 자주적 ·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

## ☰ 협의회 의무(시행령 제8조, 제10조)

- 작성 및 관리**
  - 협의회는 **협의회규정, 협의위원명부, 회원명부, 회의록 관리**
- 통보**
  - 대표자·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통보 하여야 함
  - **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**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- 협의**
  - 협의회는 **신의를 바탕으로** 기관장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함
- 보존**
  - 기관장과 협의한 때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, 출석한 기관장·대표자·협의위원, 협의내용 및 협의사항,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**3년간 보존**하여야 함

## ☰ 기관장 의무(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)

- 협의**
  - 기관장은 협의회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음
- 불리한 조치 금지**
  - 기관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
- 성실**
  - 기관장은 **신의를 바탕으로** 협의회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함
- 보존**
  - 협의회와 협의한 때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, 출석한 기관장·대표자·협의위원, 협의내용 및 협의사항,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**3년간 보존**하여야 함
- 이행**
  -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**최대한 이행에 노력**하여야 함

## ☰ 협의 당사자(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, 제 8조)

- 기관측 당사자**
  - 기관장이 직접 협의하여야 함. 다만, 공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
- 협의회측 당사자**
  -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
-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**
  -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, **협의위원은 9인 이내**로 함
  - 협의위원은 협의회 구성원의 **직종별, 직급별,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** 선임하여야 함

## ☰ 협의 사항(법 제5조) : 예시

- 근무환경 개선**
  - 사무실의 조명, 청결, 안전, 휴게실 및 흡연실 설치, OA사무실 설치, 통근버스 운영 등
- 업무능력 향상**
  -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, 결재과정의 간소화, 구비서류의 감축,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, 예산 절약의 생활화 등
- 고충에 관한 사항**
  - 당직부담의 경감, 대기성 근무 지양, 경조 비용의 합리화, 복장 자율화 등
- 기타 기관 발전**
  - 제안제도의 활성화, **직원간담회 수시 개최**, 동호회 활성화 등
- 협의 대상이 아닌 사항**
  - **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**,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,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,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, 명백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임



#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절차 안내

